

#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## ● 사업목적

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 
노동자의 **생활안정**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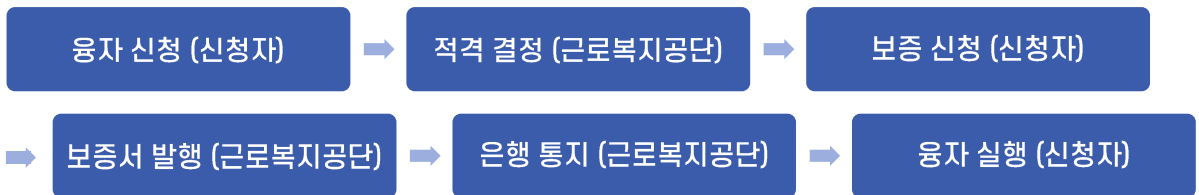
## ● 융자대상 및 조건

구분	내용	
	종류	대상 및 조건
융자 대상	①의료비, ②혼례비, ③장례비, ④부모요양비,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,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(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)</li> <li>*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</li> <li>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이하 ('21년 266만원)</li> <li>*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</li> </ul>
	⑦임금감소생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,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</li> <li>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</li> <li>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 ('21년 186만원)</li> </ul>
	⑧소액생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,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(용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)</li> <li>*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</li> <li>개인사정,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</li> <li>임금이 감소한 용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(3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이하 ('21년 186만원)</li> </ul>
	⑨임금체불생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동 중인(휴업포함) 사업장에 재직,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자 퇴직 근로자</li> <li>*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</li> <li>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(건설일용노동자는 5일분) 이상 체불</li> <li>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(4인가구) 이하 ('21년 5,852만원)</li> <li>* 건설일용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</li> </ul>
융자 한도	①의료비, ③장례비, ⑦임금감소생계비, ⑨임금체불생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,000만원</li> <li>*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,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</li> </ul>
	②혼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,250만원</li> </ul>
	④부모요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</li> </ul>
	⑤자녀학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(고등학교 재학에 한함)</li> </ul>
	⑥자녀양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(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)</li> </ul>
	⑧소액생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0만원</li> </ul>
	※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,000만원 한도	
융자 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1.5% (신용보증료 연 0.9~1.0%)</li> </ul>	
상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(단,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)</li> </ul>	

## ●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

구 분		현 행	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
소득요건		(생활안정자금) <b>266만원 이하</b> (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/3)	(생활안정자금) <b>326만원 이하</b> ( <b>4인가구</b> 월평균 중위소득의 2/3)
용자조건		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	1년 거치 3년 상환, 1년 거치 4년, 2년 거치 4년 상환, 3년 거치 5년 상환 중 <b>선택</b>
용자 한도	자녀 학자금	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	고등학생 및 <b>대학생</b> 1자녀 당 <b>연 700만원</b>
	임금체불 생계비	1인당 1,000만원	1인당 <b>2,000만원</b>

## ● 사업추진체계



## ● 지원문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: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: [www.workdream.net](http://www.workdream.net)